

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

2004. 11. 5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민행정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10월 7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4년 10월 7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4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4. 11. 5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보건소장 김 윤 수)

가. 제안이유

○의료기기법(법률 제6909호, 2003. 5. 29), 같은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18401호, 2004.5.30) 및 같은법 시행규칙(보건복지부령 제291호, 2004.7.28)이 제정·공포되어 그동안 약사법에서 관리되었던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업무가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 및 의료기기 임대업에 관한 업무로 별도 관리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사무 중 판매업의 신고 및 신고한 사항변경, 신고취소 및 업무의 정지, 청문 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규정을 삭제함. (안 별표 제 4호)
- 의료기기법 제정으로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외 12종의 사무를 신설함. (안 별표 제19호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성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략)

5. 討 論 要 旨 (없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중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